

제343회 임시회
2015. 10. 13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 (생업 지원)에 의거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, 위탁하는 경우 북한 이탈주민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
- 동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우선 고려 조항을 신설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북한이탈주민 신청자격 우선고려 신설(안 제1조, 제4조, 별지서식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공공시설내의 매점(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함) 및 자동 판매기의 설치 시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우선 설치 허가 및 위탁을 규정한 것임.

- 현행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르면,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해, 통일부장관은 ‘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’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,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26조3(생업지원)에 의거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 허가 및 위탁과 관련해 대통령령(시행령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,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에 대해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 허가 및 위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한 것으로,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 - 제1조(목적)에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를 명시하였고,
 - 제4조에서는 도민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, 조문명을 ‘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’에서 ‘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’으로 변경하고, 제2항에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 - 또한, 별표(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)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설치허가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,
 - 별지 제1호서식(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)의 첨부서류 목록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증명서류를 추가한 것으로,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조례안 '별표'에 명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편의사업, 편의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의 우선순위와 관련해, 상위법령인 동법 시행령 제47조의6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을 뿐,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, 조례안 '별표'에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한 근거 및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	조례안 [별표]	
~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1. 장애인 2. 부자(父子)가정 또는 모자(母子)가정 3.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.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	순위	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1 장애인, 부자(父子)가정 또는 모자(母子)가정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3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

< 참고자료 >

1.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현황[충북]

(2014. 12. 31 현재)

구 분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
누 계(명)	198	281	394	466	528	670	773	841	948
증가인원		83	113	72	62	142	103	68	107
증가율(%)		41.9%	40.2%	18.3%	13.3%	26.9%	15.3%	10.0%	12.7%

※ 전국(25,436명) 대비 3.7%

2. 시·군별 북한이탈주민 현황

(2014. 12. 31. 현재)

시군	비율(%)	계	남	여
계	100	948	182	766
청주시	44.8	425	85	340
충주시	15.8	150	27	123
제천시	8.0	76	12	64
보은군	0.3	3	1	2
옥천군	1.7	16	2	14
영동군	0.8	8	2	6
증평군	3.1	29	9	20
가) 진천군	8.0	76	12	64
괴산군	1.4	13	4	9
음성군	14.9	141	24	117
단양군	1.2	11	4	7

※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947명 (거주자948명-비보호4, 보호종료 2, 보호중지1), 통일부 자료

3. 충청도 공공시설 내 매점·자동판매기 우선위탁 현황

구분	매점 및 자판기 현황		관리주체	우선위탁 여부
	매점	자판기		
충북도 본청	0	16	구내식당 운영위원회	부
충북도립대학	0	11	후생복지위원회(대학 직영)	부
자치연수원	1	8	매 점 : 직원 상조회 자판기 : 직원 상조회	부
여성발전센터	0	3	직원 상조회	부
청남대관리사업소	1	2	매 점 : 문의면 번영회 자판기 : 민간(장애인)	부 우선허가